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

Q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퇴직정산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승계된 직원의 퇴직으로 당사 근속기간과 양도 회사로부터 승계된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실행된 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을 합산하여 이번 퇴직시 근무기간과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퇴직자로 부터 제출된 중간 정산 문서중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 정산의 기간및 퇴직급여도 퇴직정산 특례 적용의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퇴직금 승계처리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양수도회사간에 결정하는 사항인데 양수도 계약에 의해 근속기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모두 승계하였다면 원래 귀사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므로 양수도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중간정산 기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제기간이 종료 된 회생채권 미회수분 대손처리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Q 회사 장부에 미수금이 크게 하나 있는데, 법원인가 회생채권이라 8년동안 변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받은 바 없고, 그저 인수 받을때 올해가 8년차가 되는 회생채권이 있다 해서 봤더니 수역이네요. 관련된 회생인가 변제계획 관련된 서류만 있지, 회생채권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 서류 또한 없습니다.

이 대손처리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바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나면서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된건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조정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인가결정 이후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 미변제 되는건 귀속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대손처리는 신고사항인지 결산사항인지 애매하네요.

A 법원이 회수불능으로 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만 회수불능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처럼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변제계획이 있었는데 변제받지 못한 경우라면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귀사의 의견처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폐지하고 아예 면책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회수노력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증거를 수집후 일반 채권처럼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매출처에서 일부 지원받은 수출비용(포워딩,통관)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문의

Q 당사에서 해외매출처로 제품 선적을 하고 수출비용(포워딩,통관)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회계처리는 비용 마이너스 처리할 계획인데 지원받은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해외 매출처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사례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인 토지.건물 일괄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Q 법인 대 법인 간 토지.건물 일괄 매매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세무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각 법인이 서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확정하였으나 토지. 건물 각 안분 금액 확정은 어느 법인 기준으로 안분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토지 건물 일괄매각시 실제 매각거래 금액을 공시지가(토지,건물)나 감정평가기준금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토지 기준가 + 건물기준가×110%) 비율로 나눔.